

# 주요 업무 보고

2024. 8.

행 정 국

# 자치구 조정교부금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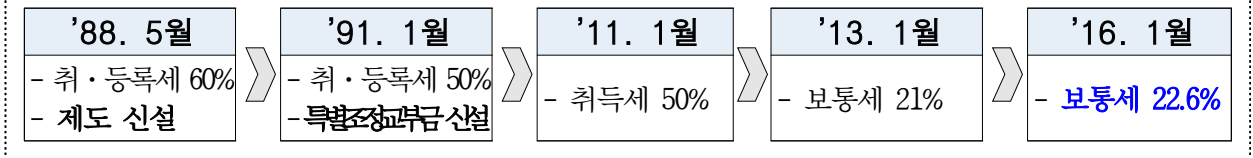
자치행정과장 : 이창현 ☎ 2133-5800 행정협력1팀장 : 최정숙 ☎ 5812 담당 : 김승희 ☎ 5814

- ◆ 합리적인 자원 조정으로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자원 보전으로 모든 자치구가 표준적 행정수준을 확보하도록 지원함

## □ 도입 배경

- '88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행정구가 법인격을 가진 자치구로 전환됨에 따라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도입
  - 특별·광역시 시세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 간 재원을 조정
- 자치구 간 세원 편차로 인한 재정 격차를 조정하고 자치구가 표준적인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재원을 보전

### 【 조정교부금제도 주요 연혁 】



## □ 제도 개요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6조,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및 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자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재원 : **市 보통세의 22.6%** ※ '24년 기준 총 4조 2,440억원
  - 레저세 20%는 별도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③에 따라 11개구에 레저세 징수 실적에 따라 배분)
- 구분 : 일반조정교부금(90%), 특별조정교부금(10%)
- 주요기능 : 자치구 자원 보전 및 재정 균형화

재원의 보전(자원보전기능)  
- 자치구별 부족자원 지원

+

재정의 균형화(재정조정기능)  
- 자치구 재정력 격차 완화

○ 배분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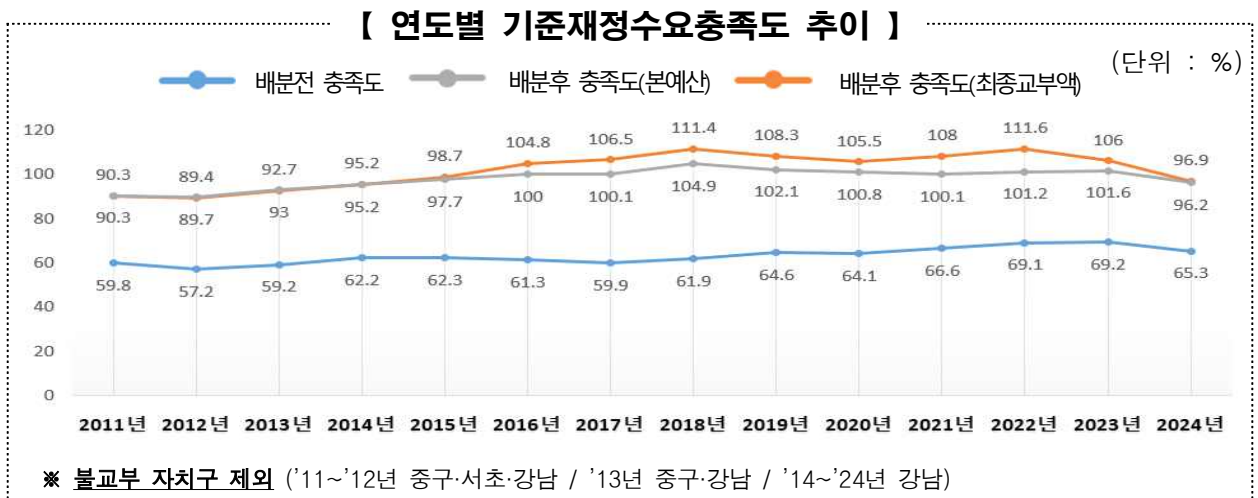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차등 교부 ※ 세부내용 **붙임2** 참고
- **특별조정교부금** : 재난·재해, 자치구 청사 및 공공시설 신설·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교부

□ **운용 현황** ※ 자치구별 현황 **붙임3** 참고

- (재원 규모) 재원을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변경한 '13년부터 지속 증가, '22년 5조 5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후 최근 2년은 감소 추세
- '22년은 공시가격 상승 등 부동산 경기 호황의 영향으로 조정교부금 규모가 전년대비 이례적으로 증가(1조 30억원)



- (충족도 추이) '16년 이후 '23년까지 총 8년간 자치구 배분후 충족도가 100%를 상회 ※ '24년 최종예산 기준 충족도는 96.9%



■ 개 요

- (근 거) 「지방자치법」 제196조,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및 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재 원) 市 보통세의 22.6% + 레저세의 20% (장외발매소 소재 11개 구)
- (구 분) 일반조정교부금(90%), 특별조정교부금(10%), 레저세분(신고납부액의 20%)

■ 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24 예산			2023 예산			총 감 (A-B)	%
	소계(A)	본예산	추경	소계(B)	본예산	추경		
계	42,657	41,718	939	48,532	41,679	6,853	△5,875	△12.1%
보통세의 22.6%	42,440	41,496	944	48,129	41,284	6,845	△5,689	△11.8%
일반조정교부금(90%)	38,196	37,346	850	43,316	37,156	6,160	△5,120	△11.8%
특별조정교부금(10%)	4,244	4,150	94	4,813	4,128	685	△569	△11.8%
레저세의 20%	217	222	△5	403	395	8	△186	△46.2%

■ 추진내용

- 일반·레저세분 조정교부금 : 안정적 재정 운영지원 및 신속집행 추진

〈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학술연구 추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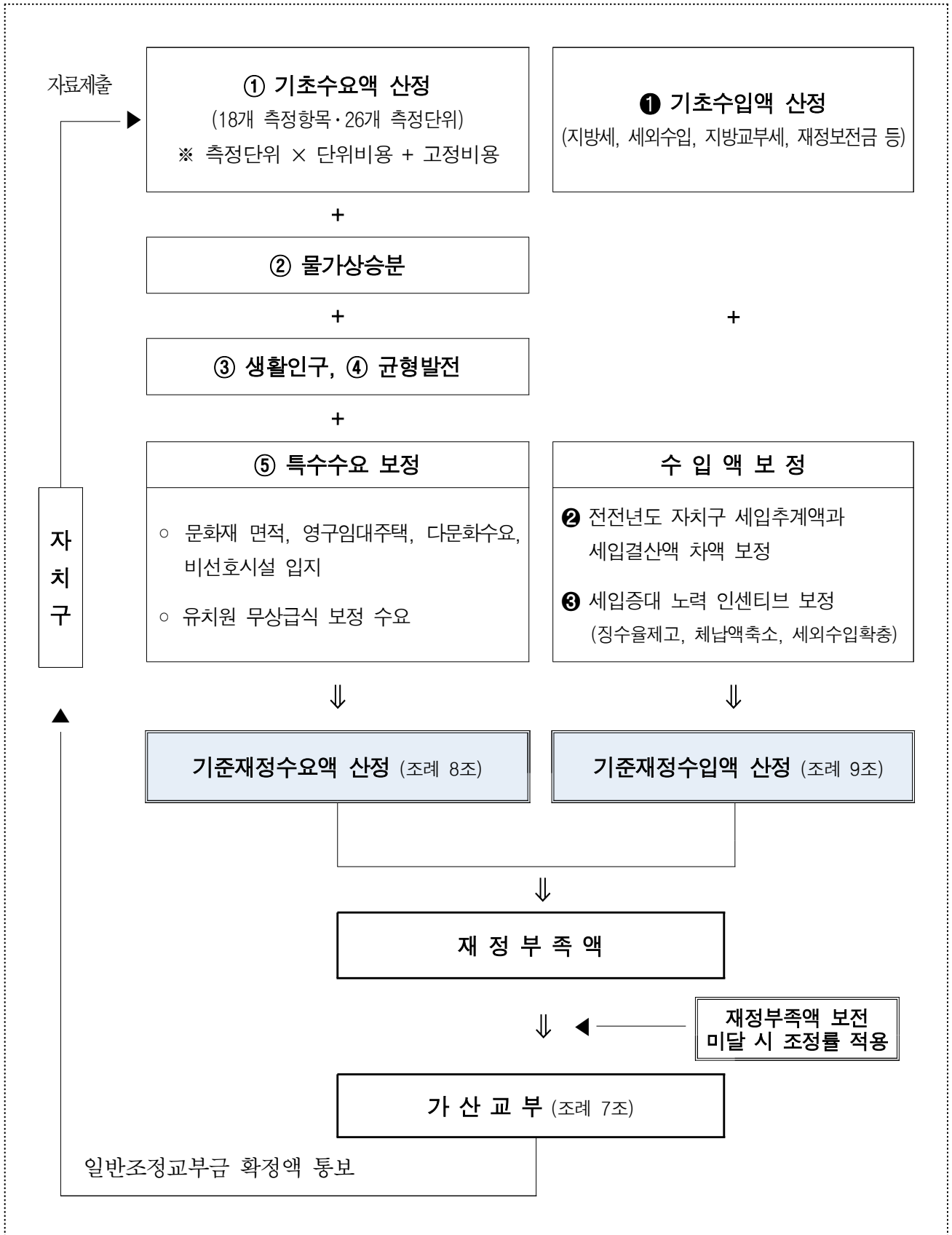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 추진기간 및 방식 : 2024. 2. ~ 11. (10개월) /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시책 연구)
- 추진내용 : 조례에 의거, 3년마다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고정·단위비용을 재산출하고 市-區 행·재정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정교부금 배분 방안 마련

- 특별조정교부금 : 긴급하고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적시 지원

■ 예산집행현황

( '24. 8. 1. 기준 / 단위 : 억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 현황		'24년말 집행 예상	
		집행액	집행률	예상액	집행률
조정교부금	42,657	28,986	67.9%	42,657	100%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배분액 및 교부후 총족도**

(최종 교부액 기준 /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교부금	총족도	교부금	총족도	교부금	총족도	교부금	총족도	교부금	총족도
<b>계</b>	<b>33,356</b>	<b>110.4</b>	<b>36,423</b>	<b>112.7</b>	<b>45,450</b>	<b>114.6</b>	<b>42,266</b>	<b>108.9</b>	<b>38,196</b>	<b>99.8</b>
종로구	585	104.0	597	104.2	948	110.1	840	106.0	712	96.9
중 구	156	101.3	130	101.2	427	110.0	292	105.5	183	96.9
용산구	690	103.7	744	104.8	1,099	110.8	971	105.8	832	96.9
성동구	1,131	106.0	1,208	108.0	1,540	111.5	1,425	106.4	1,267	96.9
광진구	1,356	105.9	1,478	108.3	1,858	112.2	1,730	106.4	1,570	96.9
동대문	1,691	106.3	1,885	110.0	2,260	112.1	2,149	106.4	1,974	96.9
종랑구	1,872	107.4	2,052	110.1	2,428	112.9	2,295	106.4	2,109	96.9
성북구	2,135	107.4	2,352	111.5	2,714	112.7	2,592	106.4	2,395	96.9
강북구	1,866	106.5	2,081	110.1	2,506	114.5	2,335	106.5	2,155	96.9
도봉구	1,838	106.8	2,043	110.9	2,412	113.6	2,280	106.8	2,098	96.9
노원구	2,543	108.3	2,772	112.0	3,194	113.7	3,015	106.4	2,795	96.9
은평구	2,043	106.5	2,266	109.8	2,709	113.4	2,539	106.4	2,337	96.9
서대문	1,455	106.3	1,588	108.7	1,940	112.1	1,820	106.2	1,655	96.9
마포구	1,030	104.3	1,113	106.3	1,461	109.5	1,371	105.7	1,214	96.9
양천구	1,524	106.3	1,658	109.4	2,010	112.0	1,883	106.2	1,714	96.9
강서구	1,870	105.9	2,038	108.5	2,451	111.1	2,320	105.9	2,119	96.9
구로구	1,761	106.4	1,943	109.6	2,357	112.6	2,209	106.2	2,019	96.9
금천구	1,299	106.0	1,427	108.7	1,788	113.2	1,647	106.4	1,494	96.9
영등포	894	103.7	961	105.0	1,315	109.3	1,215	105.5	1,050	96.9
동작구	1,426	105.8	1,569	108.7	1,971	112.8	1,819	106.4	1,650	96.9
관악구	2,009	106.5	2,232	110.6	2,652	113.2	2,498	106.5	2,301	96.9
서초구	99	100.9	53	100.5	369	107.4	262	104.9	127	96.9
강남구	-	203.1	-	204.3	-	166.8	-	158.1	-	148.1
송파구	545	102.4	539	102.5	946	108.0	813	104.7	655	96.9
강동구	1,538	105.6	1,693	108.5	2,096	111.6	1,948	105.8	1,771	96.9

※ 불교부 자치구(강남구) 제외 시 교부후 총족도 : '20년 105.5%, '21년 108%, '22년 111.6%, '23년 106%, '24년 96.9%

2024년 자치구별 자체사업 예산 비율

(본예산 기준 / 단위 : 억원, %)

구 분	일반회계 세출예산	자체사업 예산	
		금액	비율
계	223,578	50,718	22.7
종 로 구	4,990	1,090	21.8
중 구	5,248	1,505	28.7
용 산 구	5,900	1,823	30.9
성 등 구	7,042	1,887	26.8
광 진 구	7,550	1,735	23.0
동 대 문	7,860	1,695	21.6
중 랑 구	10,515	1,663	15.8
성 북 구	9,950	2,136	21.5
강 북 구	9,063	1,652	18.2
도 봉 구	8,181	1,720	21.0
노 원 구	13,093	2,245	17.1
은 평 구	10,950	2,073	18.9
서 대 문	8,149	1,640	20.1
마 포 구	7,995	1,916	24.0
양 천 구	9,008	1,909	21.2
강 서 구	12,490	2,238	17.9
구 로 구	9,300	2,239	24.1
금 천 구	7,095	1,624	22.9
영 등 포	8,700	1,943	22.3
동 작 구	8,420	2,104	25.0
관 악 구	9,902	1,914	19.3
서 초 구	8,223	2,945	35.8
강 남 구	12,377	4,826	39.0
송 파 구	11,553	2,328	20.2
강 동 구	10,024	1,868	18.6

□ '24년 지방보조사업 현황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예산현황 ('24. 8. 8.) : 14조 7,196억원(1,094개 사업)

(단위: 억원, 개)

구분	총계	공공단체보조						민간보조							
		소계	자치단체상	자치단체	교육기관보조	예비군상환자	사회복지회	소계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법정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	사회복지법정	운수사업보조
예산	147,196	123,986	58,920	4,539	2,929	21	57,577	23,210	4,703	854	290	4,267	2,264	4,361	6,471
사업수	1,094	703	441	171	8	2	81	391	167	24	24	58	77	36	5

※ 일반회계/특별회계

□ '24년 자치구 보조사업 현황

○ 자치구 지방보조사업 지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계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총계	63,459	58,920	4,539
국비	346	215	131
국+시비	48,768	46,235	2,533
국비	26,582	24,987	1,595
시비	22,186	21,248	938
시비	14,345	12,470	1,875

○ 市는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주요 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에 근거해 운영

○ 그 밖의 사업수행근거, 법령 등에 따라 정률, 정액, 차등 보조 중

- ※ (정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954억), 서울 동행일자리(739억), (정액) 교육지원 협력사업(21억), (차등)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지원(999억),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155억) 등